



평생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19. 10. 24.] [대통령령 제30132호, 2019. 10. 22., 일부개정]

교육부 (특수교육정책과) 044-203-6778

교육부 (평생학습정책과) 044-203-6318

제5장 평생교육기관

제23조(학습비의 반환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6. 8. 2.]

부칙 <제30132호, 2019. 10. 22.>

이 ㉠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

■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9. 7. 2.>
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 산한 금액
2. 법 제28조 제 4 항 제 3 호 에 따른 반 환 사 유 의 경 우	가. 학습비 징 수 기 간 이 1 개 월 이 내 인 경 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 는 금액
		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 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	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 는 금액
		4) 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 수 기 간 이 1 개 월 을 초 과 하 는 경 우	1) 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2) 수업시작 이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(가목에 따라 산 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

비고

1. "학습비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.
2. "총수업시간"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.
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.